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10

## 서 울 고 등 법 원

### 제 5 특 별 부

#### 판 결

사 건 2001누13241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참여연대

피고, 항소인 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 서울특별시강동구청장

3.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

4.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5.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6.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7.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8.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9.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

10.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

11.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12.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14.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

15. 서울특별시성동구청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10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장
  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장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장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
  2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장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장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장
  23.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
  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7. 25. 선고 2000구32075 판결  
변론종결 2004. 10. 6.  
판결선고 2004. 11. 3.

주문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취소한다.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2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예산감시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2000. 6. 29. A와 함께 학술연구 및 행정감시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각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및 1999년 주요문서목록 또는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사본 또는 출력물교부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이 공개청구된 정보 중 1999년 주요문서목록 또는 보존문서기록대장에 관하여는 공개를 결정하거나 이미 해당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3, 4, 6, 7호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비공개사유를 이유로 각 비공개를 경



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만, 피고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의 경우 2000. 7. 18. 원고에 대하여 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한다는 통보를 한 다음 원고가 공개청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에는 법인이나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각 구청의 공무원들이 식대 등의 명목으로 금월을 지출한 것은 공적인 업무를 집행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프라이버시의 보호대상이 되지도 아니하므로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거나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식대 등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행사의 참석자, 불우 주민, 이재민들의 격려·위로 등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명목의 지출금에 관한 증빙서류가 공개된다면 행사참석자 또는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민생치안 관련 방범활동비 등



경찰 등에 지원한 금액의 지출증빙에 관한 정보는 피고가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개 자체가 불가능하며,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포괄적 성격상 그 지출증빙서류 등을 공개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2000. 9. 5.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10차 공동 회장단 회의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자치단체별 설정에 맞게 지역협의회별 판단에 의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2000. 10. 6.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피고들이 2000. 1. 1.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집행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신문지상에 공개하였고, 이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필요할 경우 원고에게 그 지출증빙서류를 열람하게 하고 원고가 특정하는 부분에 대한 사본도 교부할 계획(다만, 지출증빙서류에 기재된 특정인 자연인의 실명이나 이를 추정 할 수 있는 내용 등은 제외)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모든 문서의 사본을 공개 할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초구, 동대문구를 제외하여도 복사할 문서의 양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추산부(현금출납부) 383권 2,740장, 일상경비정리부 627권 2,894장, 집행서류처 1,729권 45,867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추산부(현금출납부) 759권 4,359장, 일상경비정리부 874권 5,059장, 집행서류처 2,241권 89,465장으로 합계 6,613권 150,384장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므로 이를 전부 복사하여 사본을 교부한다면 각 구청의 업무가 마비될 것이 명백하고, 이는 업무의 파탄을 가져와 공익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청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부분공개의 가부

살피건대, 법 제12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할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가리고 복사 또는 출력하여 그 사본 또는 출력물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면 비공개되는 부분과 공개되는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대상 정보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2)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 정보 해당여부

① 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 판결 등 참조).

② 上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작비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기준액에 의해 계상되어 위 지침에 의해 집행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작비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편성되어 위 지침에 의해 집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모두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③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자료로 사용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아무런 제한 없이 공



개될 경우 이를 부정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정보에는 피고가 주최한 각종 행사 관련 지급결의서와 지출증빙서류 등에 포함된 행사참석자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피고가 성금, 격려 및 위로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 관련 지급결의서와 지출증빙서류 등에 포함된 금품수령자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개인식별정보 중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행사참가자 정보는 공무의 일환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밖에 사인이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위와 같은 행사에 참석하거나 피고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참가자 및 금품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대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개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침해 이외에도 자문 또는 여론수렴, 홍보, 격려,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시정운영이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금품 지출목적의 달성이 오히려 저해될 우려가 있는 반면 개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과 그 금액 등이 모두 공개된다면 행정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목적을 상당한 수준에서 달성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개인식별정



보 역시 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

① 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 등의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가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사용하면 당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법인 등의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 그러나, 그밖의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 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기타 사유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피고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강동구청장, 송파구청장은 해당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 중 하나로 이 사건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가 위 법조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 즉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위 피고들이 해당 비공개결정의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② 또, 피고 서울특별시강동구청장은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 중 하나로 이 사건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가 위 법조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 즉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가 이를 비공개결정의 처분사유로 삼은 것도 위법하다.

③ 또, 피고 서울특별시성동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요구에 관한 확정판결시까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유보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비공개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를 가리켜 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선해한다 하여도 이 사건 정보가 위 법조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고가 이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도 위법하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위에서 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별지 제3목록 제1~4항 기재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 (3) 미보유 정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별지 제3목록 제5항 기재 정보, 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민생치안 관련 방범활동비 등 경찰 등에 지원한 금액의 지출증빙에 관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사본 교부방법에 의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원고의 청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별지 제3목록 제5항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10 판결 참조) 그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 당시의 사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과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당초 행정청에 의해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었다가 그 후 행정청이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정보를 공개하였다면 이로써 그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을 다룰 실익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00. 11. 29. 피고가 2000. 1. 1.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사용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전체 사용액을 신문지상에 공표하였고, 그 총괄 집행내역과 월별·성질별 집행내역을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들을 비롯한 해당 구청의 공무원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를 지출하면서 작성한 지출증빙인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공표 내지 공개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타) 나아가 피고가 필요할 경우 원고에게 그 지출증빙서류를 열람하게 하고 원고가 특정하는 부분에 대한 사본도 교부할 계획이라고 하여도,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상 위와 같은 계획에 의해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목적이 달성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피고의 위와 같은 열람 후 특정부분에 대한 사본 교부의 주장을 정보공개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피고에게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본다고 하여도, 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5조, 제8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2918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2004. 7. 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5)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러나, 정보공개청구가 위 법조에 해당한다 하여도 그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청구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 자체를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주장하는 문서의 양은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피고들의 각 부서에 보관된 전체 문서의 양을 합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이를 실제로 공개할 경우 피고별 및 피고의 각 담당부서별로 구분한 다음 청구량의 과다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상당량에 달하는 1999년도 주요문서목록 또는 보존문서기록대장을 사본 또는 출력물교부의 방법으로 정보공개결정을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4호증의 기재나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거나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청구권남용 등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대상 정보 및 미보유정보에 해당하는 별지 제3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10

재판장      판사      이종찬 \_\_\_\_\_

판사      김우진 \_\_\_\_\_

판사      이성구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10

## 제 1 목 록

(제1목록 삭제)

## 제 2 목 록

(제2목록 삭제)

## 제 3 목 록

(제3목록 삭제)



## 관 계 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10

### 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소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②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10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등은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복제  
물의 교부 끝.